

의안번호	2209853
의 퇴 인	강선우 의원
회 답 일	2025.4.28.
추계번호	25C2318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2조제6항 (아동학대의 예방 과 방지 의무)	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범위에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외에 장애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추가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제6항 (아동학대의 예방 과 방지 의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범위에 장애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가 추가되고,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·통합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을 위해 280억 3,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, 이 중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 예산으로 17억 4,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[표 1]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 예산 현황(2025년)

구분	사업내용	예산액(백만원)
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	아동학대 대응 미래과제 발굴	25
	아동학대 대응 사업 수행 표준화	225
	아동학대 대응 인력 전문성 강화	406
	아동학대 예방 인식증진	1,087
합 계		1,743

자료: 보건복지부

- 그러나 장애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확대될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장애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- 참고로, 개정안의 내용 중 양육상황 점검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아동으로 확대하고,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연계 및 연차 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
 - －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조치된 경우 시·군·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,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로 사례를 이관하여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
 -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(2025년 사업 기준 2억 3,000만원)은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, 연계하는 것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데, 장애아동학대 관련 내용의 추가 작성에는 별도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